화평법 · 등록정보 공개 2단계

등록·신고정보 공개 확대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

2025년 8월 7일 이전에 등록·신고한 화학물질의 정보 일부가 공개됩니다.
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**2027년 4월 27일까지** 보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
📌 한눈에 보기

무엇이	화학물질 등록·신고 시 제출한 정보 중 명칭, 용도, 분류·표시, 유해성 요약 등 일부 항목이 공개됩니다.
누가	’25.8.7. 이전에 등록·신고한 사업자 (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외, 기존화학물질은 1단계로 ’26.9.15. 별도 안내됨)
해야 할 일	공개될 정보에 **영업비밀** 또는 **개인정보**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있다면 보호를 요청합니다.
언제까지	**2026. 10. 28. ~ 2027. 4. 27. (6개월)**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.
어디서	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-REACH) kreach.mcee.go.kr

1.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?

등록 물질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가~사목	신고 물질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제2호
①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②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③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④ 등록형태 (연간 제조·수입량 범위, 제출자료 생략 여부 등) ⑤ 물리적·화학적 특성 요약자료 ⑥ 유해성 요약자료 ⑦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	①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②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③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(작성사유 포함)

✔ **등록업체명 등 업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**
✔ 내가 제출한 정보는 K-REACH 로그인 → **[화학물질 등록]** → **[등록]** → **[등록 완료 내역]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2단계는 별도 미리보기 화면 없음)

2. 무엇을 보호 요청할 수 있나요?

공개되는 정보 중 **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**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도 보호 요청이 불가합니다.

⭕ 보호 요청 가능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	❌ 보호 요청 불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~6호
[등록·신고 공통] ·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제품명 ·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 **[등록만 해당]** · 제품의 취급 주의사항·폐기방법 등 안전사용 자료 · 유해성 요약자료 (시험방법·결과 제외) · 위해성 요약자료 (무영향수준 제외) · 등록의 형태 (연간 제조·수입량 범위 등)	·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· 화학물질의 취급 주의사항·폐기방법 등 안전사용 자료 ·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· 물리적·화학적 특성 · 유해성 요약자료 중 시험방법·결과 · 무영향수준(사람 건강·환경) · **이미 공개된 정보** (유해성심사결과고시, MSDS, 웹사이트, 특허·논문 등)

3. 신청 전 자가점검 (체크리스트)

아래 6가지 조건을 **모두 충족**해야 자료보호 특례요청이 가능합니다. 작성한 체크리스트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.

No	점검 항목	요청 가능
1	등록 완료 시점이 **'25.8.7. 이전**인가요?	**예**
2	요청 항목이 **보호 요청 불가 항목**(위 ❌ 목록)에 해당하나요?	**아니요**
3	요청 항목이 **보호 요청 가능 항목**(위 ⭕ 목록)이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**영업비밀**에 해당하나요?	**예**
4	**[비공지성]** 이미 공개된 정보인가요? → 국내외 화학물질목록·특허·웹사이트 등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입증	**아니요**
5	**[비밀관리성]**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? → 내·외부 취급자 관리, 물리적 접근 통제, 전산 보안 등	**예**
6	**[경제적 유용성]** 공개 시 실질적인 상업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? → 사업상 가치, 공개 시 경제적 불이익, 개발 비용 및 산출 근거 등	**예**

4. 신청 방법 (K-REACH 온라인 제출)

01 **K-REACH 접속 및 로그인** — kreach.mcee.go.kr

02 **업체정보 현행화** — [마이페이지] → [사업자정보]·[사용자정보]에서 주소·이메일·연락처 수정
※ 보완요청·처리결과 알림을 받을 실무 담당자 정보로 반드시 업데이트

03 **특례요청 메뉴 이동** — [자료보호 연장/해지] → [자료보호 특례 요청] → [자료보호 특례 요청서 작성]

04 **기존 등록정보 불러오기** — 등록의 형태(등록/변경등록) 선택 → [물질검색] → 대상 물질 선택

05 **첨부서류 업로드** — 아래 제출서류 표 참고

06 **처리기간 안내사항 확인 후 동의**

07 **제출 완료**

▸ 제출서류 및 파일명 양식

구분	서류	파일명 양식
신청서	[별지 제37호서식] 자료보호요청서 (직인 날인 사본)	(등록번호)자료보호요청서_업체명
증빙자료	(필요시) 선임사실신고증	(등록번호)선임사실신고증_업체명
	(필요시) 민원대행업체 위임서류	(등록번호)위임서류_업체명
첨부자료	자료보호요청서 엑셀파일 (K-REACH 양식 다운로드)	(등록번호)자료보호요청서_업체명
	영업비밀 입증자료	(등록번호)영업비밀입증자료_업체명
체크리스트	자료보호 특례 체크리스트	(등록번호)자료보호 특례 체크리스트_업체명

※ 등록번호는 00-0000-00000 형식으로 기재

▸ 자료보호요청서 작성 Tip

- **요청인** — 상호, 사업자번호, 대표자, 담당자 성명·연락처, 소재지 기재 (알림을 받을 실무 담당자 필수)
- **요청 요지 및 이유** — 보호대상 자료별로 보호가 필요한 이유 작성. 보호대상이 4개 이상이면 행을 추가해 구분 (행 추가 외 서식 변경 금지)
- **보호대상 자료 목록** — 해당 조항과 세부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
  예) ①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 바목, 등록의 형태 / ②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 라목, 유해성 요약자료 중 28일 반복투여독성 시험 내 자료개요
- **보호 / 보호기간 연장** — 이번 특례요청은 **'보호'** 선택

5.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요?

영업비밀은 아니지만 공개 정보에 **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**가 포함된 경우에는 K-REACH가 아닌 **이메일 공문**으로 보호를 요청합니다. (별도 양식 없음)

제출처 (등록)	shj6826@korea.kr
공문 포함사항	① 신청업체 정보(등록·신고 업체명 등) ② 등록·신고번호 ③ 보호 요청 정보 및 위치 ④ 보호 요청 사유

6. 자주 묻는 질문

Q. 협의체 구성원이나 후발등록업체도 요청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**공동제출**하거나 **자료제공동의**를 받아 제출한 자료는 자료소유자와 협의하여 **대표자**(시행규칙 제17조제1항)가 요청해야 합니다.

Q.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유해성심사결과고시·정보공개 목록(화평법), 통계조사 공개 목록(화관법), 살생물물질·제품 승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개정보(생활화학제품법), 자사 MSDS·판촉물·웹사이트, 특허·논문 등을 확인하세요.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정보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Q. 공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
당시 등록신청서의 담당자가 아닌, 아래 공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☎ 관계기관 문의처

[등록]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-560-8693, 8694
[신고]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 032-590-5565~5567, 5569, 5562~5563

※ 신고정보 공개 및 자료보호 요청 세부사항은 K-REACH 공지 「(2026.10.28.) [2단계] 등록·신고 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」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자료보호 대상 여부 검토나 요청서·입증자료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**알켐(주)**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근거: 「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제2026-195호, 2026.7.29. 시행) 제11조의2 · 첨부파일(안내문, 작성방법, 요청서 양식, 체크리스트) 참고